

#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8. 1.

발 의 자 : 김영우 · 이현재 · 류성결  
신동우 · 안덕수 · 김동완  
이만우 · 정병국 · 하태경  
조해진 · 김광림 · 문정림  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

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자질, 업무능력,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업무수행이 적합한 공직자를 판별하려는 것임.

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자질, 업무능력,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위원으로서 이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인사위원이 인사검증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함.

또한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보다는 후보자와 가족의 사생활 검증에 치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의 범죄경력, 병역, 납세실적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,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

함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청문절차를 마련하고자 함.

사생활이라 함은 공직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정신적·물질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함.

### 주요내용

가.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범죄경력, 병역,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(안 제14조의2 신설).

나.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는 공개 진행하되,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(안 제14조제2항 신설).

##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그 밖에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직업 및 학력 등의 공개)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으로 선임된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직업·학력·경력에 관한 사항
2.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
3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
4. 최근 5년간의 소득세·재산세·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
5.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인사청문회의 공개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4조(인사청문회의 공개) ①</p> <p>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, 그 밖에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한다.</u></p> <p><u>제14조의2(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직업 및 학력 등의 공개)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으로 선임된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직업·학력·경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「<u>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</u>」의 <u>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</u></p>

3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0조의2  
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
4. 최근 5년간의 소득세·재산세·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
5.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